ISSUE BRIEF

이슈브리프 849호
(2026. 5.28)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의미와 제도화 과제: 특별법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제849호

김성배 happynation@inss.re.kr
이성훈 abcd0159@inss.re.kr
정준오 juno7629@inss.re.kr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국문초록

국방부의「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발표는 핵잠 논의를 국가의 공식 정책 단계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핵잠을 국가안보와 전략기술, 산업역량, 국제협력, 지역정책이 결합된 국가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저농축우라늄 기반 연료, 국내 개발·건조, 국제 비확산 원칙, 원자력 안전과 보안, 국가산업 발전 연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목표를 공식화함으로써, 핵잠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특별법 논의는 이미 제시된 정책 방향을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법·제도 체계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별법은 사업추진체계와 안전규제, 권한배분, 재정지원, 핵연료 관리, 주민수용성 확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종합 실행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상설 추진체계, 군용 원자로에 특화된 독립 안전규제 체계, 저농축우라늄 기반의 연료조달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 민·군 역할 분담, 보안과 정보공개의 이원적 운영체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핵잠 사업이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 재정투입은 물론 산업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 기지 인프라 구축, 주민수용성 확보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특별회계 또는 장기 재정관리체계, 사업관리 특례와 기업의 성실수행 면책, 공급망 구축과 전략부품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제도, 지역주민 지원과 안전 모니터링, 단계별 로드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핵잠 특별법은 정책 원칙과 조직체계, 안전·보안, 재정과 산업, 주민수용성과 인프라를 하나의 추진체계로 묶어, 핵잠 사업을 북핵 억지력 강화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함께 견인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정착시키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주제어 : 핵추진잠수함, 장보고 N사업, 특별법, 범정부 추진체계, 저농축우라늄, 민관 역할 분담, 성실 수행면책, 주민수용성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의미 및 함의

5월26일 국방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은 그동안 필요성과 당위성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 문제를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공식 정책 문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발표는 핵잠을 단순한 함정 건조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전략기술, 산업역량, 국제협력, 지역정책이 함께 결합되어야 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규정하였고, 그 추진 방향과 기본원칙, 대외적 메시지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분명히 제시하였다. 특히 핵잠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핵잠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이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분명하다. 우선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한다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작전 지속성과 국제 비확산 의무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이 공식화되었다. 또한 획득·건조·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개발·국내 건조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독자적 전력체계 구축을 지향하는 국가적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국내 원자력과 조선산업의 기술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향까지 제시함으로써, 핵잠 사업이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민·군 기술 결집과 산업적 파급효과를 함께 겨냥하는 장기 국가프로젝트임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설계에서 건조, 운용, 정비, 해체에 이르는 총수명주기 관리 원칙을 제시하고, 핵무기 비보유 입장과 국제 비확산 의무 준수,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안전조치 체계 구축을 병행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안보적 필요성과 국제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정책 방향도 함께 천명하였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핵잠 도입과 관련해 공식화된 국가정책을 실제로 작동하는 법과 제도로 구체화하는 데 있다. 국방부 기본계획이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의 특별법 논의는 그 방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실행체계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군용 원자로에 특화된 독자적 안전규제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저농축우라늄 기반의 연료조달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법제화할 것인지, 건조기지·모항·정비기지·해체시설을 포괄하는 총수명주기 인프라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수용성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핵잠 사업이 국가전략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 특별법, 세부 시행계획, 조직 설계가 상호 정합성을 갖춘 하나의 추진체계로 결합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도 분리되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주관한 「핵잠 추진 민관 합동 지원단」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법 제정시 종합적인 국가입법으로 설계

핵잠 사업은 기존 방위사업법이나 원자력안전법, 국가계약법 등 개별 법률만으로는 온전히 다루기 어렵다. 핵잠은 군사무기이자 원자력 추진체계를 갖춘 전략자산인 만큼, 하나의 독립 법률로 모든 쟁점을 억지로 포섭하려 하기보다, 특별법을 모법으로 두고 관련 특례법과 기존 법령 개정을 함께 묶는 패키지형 입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 방식은 군사기밀 보호, 수출통제, 계약 특례, 주민지원, 핵연료 관리, 안전규제처럼 성격이 다른 사안을 각각 정교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핵잠 사업은 일반적인 국방사업이나 민간 원자력 사업과 구분되는 독자적 입법 구조가 요구된다.

이 점에서 호주의 핵잠 추진 사례는 중요한 참고가 된다. 호주는 기존 민간 원자력 제도(ARPANS Act, 1998)에 핵잠 사업을 단순히 편입시키지 않고, 군용 핵추진체계의 특수성에 맞는 별도의 법(Australian Naval Nuclear Power Safety Bill, 2023)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호주의 핵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 규제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 설립, 면허제도, 의무사항, 집행 권한 및 처벌 조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구조는 △총칙 △핵안전 의무 △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 면허 △준수 및 집행 △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규제 기관 △연방법과의 관계 등 기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 사례는 핵잠 특별법이 단순한 선언적 지원법이나 개별 특례의 집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특별법은 사업 추진, 안전규제, 권한배분, 추진체계를 하나의 법적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정리하는 종합적 실행법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 적용 범위 역시 건조, 유지보수, 운용, 정박, 수리, 연료 저장 및 이전,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를 포괄해야 한다.

사업추진체계 역시 국방부 차원의 임시 TF나 한시적 협의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통령 직속의 정책조정기구가 국가전략 방향과 대외협상 기조를 총괄하는 한편, 국무총리 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처 간 조정, 일정 관리, 예산 통제, 인허가 정비를 담당하는 범정부 상설 집행조직을 설치하고, 국방부·방위사업청·관계 부처·연구기관·산업계가 참여하는 전담사업단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조직에는 단순 실무협의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설계부터 건조, 운용 준비, 정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단일 추진체계 아래 움직이지 못하면, 사업은 행정적 분산 때문에 제약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특별법은 범정부 차원의 상설조직과 단일 책임원칙을 법적으로 고정하는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책임 분산과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특정 상설조직에 일원화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또한 핵잠 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 있는 단기 정책 과제가 아니므로, 법률에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장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상설조직의 법적 지위와 책임자의 임기 보장, 정기적인 국회 보고, 주요 정책 변경 시 보고 또는 심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사업이 정치 일정에 따라 쉽게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국 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기존 법령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예외와 특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사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청회 방식이나 획일적 정보공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개를 전면 배제하기보다, 비공개 심의 절차와 제한적 보고 체계, 보안등급에 따른 차등적 정보 공개 원칙을 법률로 제도화함으로써 군사기밀 보호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켜야 한다.

핵연료 관리 문제와 민·군 역할 분담의 제도적 방향

핵잠의 연료 문제는 사업 전반의 핵심 병목요인인 만큼, 특별법 내에서도 단순한 부속 규정이 아니라 별도의 장(章)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사업 초기에는 외부 조달을 전제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선 다변화와 대체 조달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연료의 조달·장전·교체·저장·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 책임 아래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의 핵연료 관리법 제정도 검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군사용과 민수용의 역할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원칙도 필요하다. 핵잠은 본질적으로 군사 플랫폼인 만큼, 민간 원전과 동일한 규제·운영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나 핵연료 조달 기반 구축과 관련 기술 축적, 연구개발 및 산업적 준비 과정에서는 민간의 참여와 역량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연료 관련 기반기술 개발, 산업 기반 조성, 공급망 구축 등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적극 활용하되, 일정 단계 이후에는 실제 군사 운용과 보안, 군용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과 군이 각자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어느 시점부터 어떤 분야가 군의 전속 관리·통제 영역으로 전환되는지를 법률과 기본계획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과 원칙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제정만 서두를 경우, 이러한 경계와 역할 분담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협력 문제 역시 동일한 원칙 아래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미 협상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의, 군사적 기술보호와 같은 사안은 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산업적 협력과 기반기술 확보, 공급망 구축 등은 민간과 연구기관이 중심적으로 담당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즉, 국제협력과 핵연료 관리체계 역시 정책 원칙과 역할 분담이 우선 정립된 이후 단계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핵잠 사업에서는 민·군의 역할이 불명확해질수록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사업 효율성도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특별법과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군은 핵잠수함의 군사적 요구조건 설정과 원자로 장입 이후의 운용, 군사보안, 항만 통제, 작전운용 및 군사 정비체계 관리 등을 담당해야 한다.

반면 민간과 연구기관은 핵연료 관련 기반기술 개발, 조선 및 부품 생산, 공급망 구축, 시험·연구, 전문인력 양성,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초기에는 민간 중심의 준비와 기술 축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지만, 일정 단계 이후에는 핵심 운용과 관리체계가 군 중심 구조로 명확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 결국 민·군 역할 분담은 단순한 협업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과 권한의 경계를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특별법과 기본계획에 이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안전 및 규제는 군 특수성을 반영한 이원적 구조로 설계

안전과 보안 문제는 군사적 특수성을 반영하되, 동시에 독립적인 안전검증 체계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핵잠수함의 안전 문제는 단순히 민간 원전의 연장선에서 다룰 수 없다. 잠항과

급기동, 충격, 밀폐공간 운용, 장기 작전 지속 등 핵잠수함의 운용 환경은 민수용 원자로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기준 역시 군용 해상 원자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별도의 체계로 마련되어야 하며, 기존 민간 원전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군사기밀 보호와 실제 작전환경을 고려할 때, 군용과 민수용 원자력 체계는 법률상 구분된 규제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군사적 특수성을 이유로 안전 문제를 군 내부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핵잠 사업에서는 사업 수행 주체와 안전 감독 주체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즉, 설계·건조·운용은 국방부와 해군,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더라도, 안전기준 승인과 정기 점검, 안전성 평가 및 독립 감사는 별도의 규제기구가 수행해야 한다. 여기서 독립규제란 사업 추진기관으로부터 분리된 조직이 안전기준 설정과 검증, 감사 권한을 별도로 행사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 규제기구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독립적 권한을 가진 상설 조직이어야 하며, 범정부 차원의 별도 기관 또는 군용 원자력 안전규제 전담조직 형태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결국 핵잠 안전체계의 핵심은 군사적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외부의 독립적인 안전통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아울러 육상시험시설, 건조기지, 핵연료 저장시설, 모항, 정비·수리시설, 폐기 관련 시설 등 핵잠수함 운용의 전 주기와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는 국가안보 핵심시설로 지정·관리해야 한다. 원자로 설계, 소음저감 기술, 정비 자료, 운용 정보, 연료 취급 자료 등도 국가핵심기술 또는 최고등급 보안정보로 분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건조·운용시설에 대해서는 안티드론 방어체계, 위성감시

대응체계, 사이버보안, 접근통제, 인원 신원검증, 정기 보안심사 등을 포함하는 통합 보안체계를 법률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핵잠 사업은 군사보안과 산업보안이 함께 작동하는 복합 보안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련 보안조치는 개별적보다는 통합적으로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

다만 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사업 전반을 과도하게 비공개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 방향과 추진 원칙은 국민에게 공개하되, 세부 실행계획과 핵심 시설 관련 정보는 국가안보와 전략적 필요를 고려하여 비공개로 관리하는 이원적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육상시험시설과 건조기지, 모항, 정비·폐기시설의 구체적 위치와 기능, 운용 시기와 같은 정보는 제한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처럼 공개와 비공개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불신을 줄이면서도 국가안보상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핵잠 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 구축

핵잠 사업은 단년도 일반회계 방식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장기 국가전략사업이다. 함정 건조비뿐 아니라 원자로 체계 구축, 핵연료 확보, 정비시설 및 보안 인프라 확충, 교육훈련, 사용후 핵연료 관리, 향후 해체와 폐기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전주기 비용이 지속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별도 특별회계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재정 관리체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재정체계는 단순한 건조 단계에 한정되지 않고 운용과 유지·보수(MRO), 해체 및 폐기물 관리까지 포괄해야 하며, 단기적인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업관리 방식 역시 일반 국방 획득사업과는 다른 특례가 요구된다. 핵잠수함 사업은 기술적 불확실성과 개발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설계 변경과 단계별 계약, 실증 기반 개발, 위험 분담형 계약, 다년도 계약 등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성실수행 면책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산업계가 과도한 책임 부담을 우려해 참여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가 차원의 기술역량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면책은 안전기준 위반이나 보안 누설, 허위자료 제출, 결함 은폐와 같은 위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연구개발 과정의 실패와 법적 책임 대상 행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특별법의 역할은 중요하다. 핵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군함 건조사업이 아니라 조선·원자력·소재·전자·제어·정비(MRO) 산업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한된 수량의 함정을 건조하는 사업 특성상 대형 조선소 중심의 구조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협력 중소기업과 부품업체, 연구기관, 대학, 시험·인증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망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공급망 우선조달 원칙과 전략부품 국산화 로드맵, 협력업체 기술보호 지원,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 등도 법률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력양성 체계 역시 특별법의 핵심 요소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핵잠수함은 단순한 조선기술만으로 운용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 원자로 운전과 방사선 관리, 유지보수, 안전심사, 보안관리, 수중작전 수행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고도의 복합전력이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핵잠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비롯해 승조원 원자력 인증제도, 정비인력 자격체계, 전략기술 인력에 대한 특별 보호 및 경력관리 제도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장기 근속을 위해 보안수당과 특수근무 수당, 장기재직 인센티브, 퇴직 이후의 경력 연계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핵잠 관련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인력 축적과 전문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지 인프라 조성과 주민수용성 확보, 단계별 로드맵의 체계화

핵잠수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사업 착수 이전 단계부터 제도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건조기지와 모항·정비기지의 기능을 구분한 입지정책과 함께, 군사보안과 방사선 안전, 해양환경 영향, 작전 효율성, 향후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선정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기지 문제는 단순한 부지 확보 차원이 아니라 안전·보안·작전·지역사회 수용성이 결합된 국가정책 사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조기지와 모항, 정비·폐기 관련 시설은 지역사회와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주민 입장에서는 국가와 군, 운영기관 중 어느 주체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 구조가 명확해야만 사업에 대한 기본적 신뢰도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특별법에는 지역발전기금 조성, 지역주민 우선 고용, 세제지원, 생활 인프라 확충, 환경·방사선 안전 모니터링 체계, 주민 안전 감시위원회, 주민공론화 절차 등을 함께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수용성은 단순한 설명이나 일회성 홍보만으로 확보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안전보장과 지역경제 지원,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소통체계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필요할 경우 기지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또는 특별법 내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국가전략사업 추진과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로드맵 역시 단순한 정책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제 사업 추진과 직결되는 단계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가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제시한 이상, 육상 시험시설과 건조기지, 모항, 정비·MRO 시설, 연료 저장시설, 폐기 시설, 전문인력 양성체계와 같은 핵심 요소들은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선행 과제로서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안전 및 보안체계는 서로 분리된 개별 사업이 아니라 1번함 진수와 후속 전력화 일정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국가 차원 계획 아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결국 로드맵은 목표 시점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각 단계별 준비과제와 추진 주체, 제도 정비, 재정 투입, 기반시설 확보 일정을 함께 담아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로드맵의 공개 범위는 국가안보와 전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공개 로드맵에는 국가정책 방향과 추진 단계, 핵심 인프라 범주, 인력양성 방향, 안전원칙 등 기본적인 정책 틀을 제시하되, 세부 시설 위치와 구축 시기, 배치 및 운용계획과 같은 정보는 비공개 실행계획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핵잠 특별법은 단순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넘어, 정책 원칙과 기본계획, 조직체계 구축, 인프라 조성, 산업생태계 육성,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하나의 통합된 추진체계로 연결하는 종합적 실행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핵잠 사업이 일회성 의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해양억지력 강화와 첨단 전략산업 역량 확충을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속될 수 있다.

핵잠 사업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국가 전략사업이다. 원자력, 조선, 안전규제, 국제협력, 산업생태계, 주민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가 긴밀히 결합되는 만큼, 정책·산업·연구·학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적 지원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추진을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으로 기능할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지원단 역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